

광주지방법원 2024. 3. 13 선고 2023나7129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4. 3. 13 선고 2023나71291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11. 29 선고 2022가단400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관재, 고주은, 박기범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범석

변론종결 2024. 1. 17.

판결선고 2024. 3. 13.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11. 29. 선고 2022가단400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487,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1. 27. D 주식회사로부터 광양시가 발주한 ‘C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21. 2.경 피고에게 ‘C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 공사 중 상수도관 매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재하도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21. 3. 10. 원고에게 단가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한 후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2021. 3.말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배수관로 단선은 m당 32,000원, 배수관로, 송수관로 복선은 50,000원, 급수관로 단선은 32,000원으로 단가를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피고가 공사를 중단한 후 피고의 노무비, 장비대금, 자재대금, 식대 및 숙박대금, 유류대금 합계 120,177,290원을 원고가 대신 변제하였는데, 피고가 시공한 부분의 기성 공사대금은 84,690,000원에 불과하므로 그 차액 상당인 35,487,290원(= 120,177,290원 - 84,690,000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한 피고의 채무와 실제 공사대금의 차액 35,487,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콘크리트(줄포장)과 아스콘 임시포장까지 포함하여 배수관로 단선은 m당 32,000원, 배수관로, 송수관로 복선은 50,000원, 급수관로 단선은 32,000원으로 단가를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기성 공사대금이 84,690,000원이라는 사실 및 원고가 이를 초과하여 피고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와 피고가 m당 단가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도급계약의 경우 각종 자재 및 장비료의 부담 주체, 구체적인 공사 범위에 관한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존재하고, 하도급인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하도급인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 형태의 계약도 존재하는바, m당 단가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하여 하수급인인 피고가 장비대금, 노무비용 등 제반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는 광양시에서 발주한 공사로 계약단가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3가지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재하도급계약은 발주자와 원수급인 사이의 계약,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인 원고 사이의 계약과 별개의 계약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원고가 작성한 시공금액 정산서(갑 제6호증)의 시공금액은 약정한 m당 단가에서 미시공된 포장

부분의 단가 7,000원을 뺀 25,000원 또는 43,000원을 m당 정산단가로 계산한 것인데 포장 부분의 단가를 7,000원으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미시공된 포장 부분의 단가를 7,000원으로 산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

③ 작업일보(갑 제5호증)에는 2021년 2월의 작업내역만 나타나 있고, 2021년 3월 작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아 시공물량 및 공사금액(갑 제4호증의 2), 시공금액 정산서(갑 제6호증)는 믿기 어렵다.

④ 갑 제7호증은 노무비 지급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내역 등인데, 노무비 지급명세서상 고용주 및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는 모두 원고로 되어 있고, 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작성일자가 2021. 4.로 되어 있으며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대금을 이체한 업체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와 거래한 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위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지출 증빙을 남기기 위하여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채권자들로부터 피고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확인서 등을 전혀 받지 않은 점, 원고는 위 세금계산서로 세금 처리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상의 채무 및 노무비 등이 피고의 채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정당한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피고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남수진, 판사 이미주, 판사 김연경